



성실신고 확인하는 관세조사

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.

- ▶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·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,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

- ▶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, 정기적인 '법인심사'와 비정기적인 '기획심사'로 구분되고,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법인심사 (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)	기획심사 (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(최근 4년 이상)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

- ▶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'종합심사'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AEO 공인업체		非AEO 업체	
공인/종합심사		법인심사	기획심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3~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·관 합동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기업 4~5년 주기 정기심사 세액, 외환,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위험업체 특정사안 수시심사 조사부서 공조심사 	

관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

관세조사를 위한 TIP

- 관세조사 전에 「관세조사 일정」을 안내합니다.
 -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세조사 준비를 위하여 조사개시 10일전에 심사기간, 심사사유 등을 기재한 「기업심사 통지서」를 송부합니다.
- 부득이한 경우 조사착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심사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원활한 관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,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관세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합니다.
 - 대상업체의 수출입규모, 조사인원 · 방법 ·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일 이내로 실시하며,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관세조사는 관세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.
 -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'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'을 실시합니다.



문의처

☎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-481-7973, 기획심사팀 042-481-7883